

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 협약서

경기도 평택시(이하 “지자체”라 한다)와 (주)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사업주체”라 한다)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하여,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택 고덕 어울림스퀘어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(어린이집)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, 평택시 보육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입주자 아동들의 심신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, 건물, 부지 장비 등의 인계·인수 및 관리·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건물 등의 표시) 사업주체가 지자체에게 제공하는 건물, 부지, 장비 등(이하 “건물 등”이라 한다)은 각 호와 같다.

- 소재지 :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330-2
- 용도 : 보육시설(어린이집)
- 규모 : 299.64m²(1층) [설계도면 별첨]
- 비품 및 장비 : 현재 보육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품 및 장비 일체

제3조(신의성실)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.

제4조(인계·인수 및 사용기간) ① “건물 등”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주체에게 있으며, 사업주체는 “건물 등”的 사용권을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. 사용기간은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.
② 사업주체는 “건물 등”的 사용권을 별첨된 설계도면대로 인계하며 지자체는

본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“건물 등”의 사용권의 인수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.

③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“건물 등”의 전대나 사용권의 양도를 할 수 없다.

④ 지자체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획한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공간면적 등 제반 보육시설 환경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.

⑤ 지자체는 “건물 등”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구조 및 전기, 수도, 가스, 냉·난방, 배연설비, 배관설비 등에 준공 전 미비사항이 있거나 영유아보육법령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·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업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·관리) 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평택 고덕 어울림스퀘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실외놀이터 등의 부속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 지자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권을 인수받은 “건물 등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와의 협의 없이 “건물 등”的 구조 변경 등 일체의 원형 변경을 할 수 없다.

③ 지자체는 제2항의 유지·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단, “건물 등”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보수한다.

④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“건물 등”的 유지·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“건물 등”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6조(용도제한) 지자체는 사용권을 인계받은 “건물 등”을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한다.

제7조(리모델링 등) ①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골조공사, 인테리어를 포함한 기본마감 공사를 시행하고, 지자체는 본 협약 체결 후 “건물 등”에 국공

립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마감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 간 분담범위는 사업주체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③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비용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.

제8조(행위금지) ①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단지 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단지 내 부대,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 등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·사용·훼손하는 행위
 - 2. 단지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
 - 3.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
 - 4. 기타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 질서를 해하는 행위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어린이집 운영 중 필요한 시설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대한 허용 범위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수선 및 손해배상) ① 지자체가 제4조 제3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“건물 등”에 파손, 손괴, 변형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자체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, 재난, 기타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“건물 등”的 파손, 손괴, 변형 등의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감가상각 등 원상복구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③ 지자체가 “건물 등”的 유지·관리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자체는 사업주체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- 제10조(어린이집 운영)** ① 사업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사회 내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지자체(제4항에 따른 위탁체의 경우에도 같다)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자체는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제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정원 계획 및 영·유아반 편성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체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7호를 준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70을 평택 고덕 어울림스퀘어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나머지는 거주자 자녀와 거주자가 아닌 자녀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함에 동의한다. 다만,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자녀를 입소시키고, 추후 결원 발생 시 정원의 100분의70 내에서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.
- ④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운영자(이하 “위탁체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체결한 협약서는 위탁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에게 위탁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1. 위탁체의 위법행위로 입주자의 민원 발생시
 2. 위탁체가 제4조 내지 제9조, 제10조 제2항,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⑥ 지자체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위탁체의 선정 또는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계법령과 당해연도 보육사업 안내기준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.

- 제11조(간선시설의 사용 및 개별사용료 납부)** ① 지자체는 단지 내 전기, 수도, 가스 등 간선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체와 사전 협의하여야

하며, 간선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지자체가 별도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자체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비 및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개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인건비, 승강기유지비,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에 따른 개별사용료의 최초 부과 시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 열쇠를 수령한 날로 한다.

④ 사업주체는 지자체에게 제2항에 따른 개별사용료의 납부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며, 지자체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일자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.

⑤ 지자체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개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자체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한다.

제12조(협약의 해제·해지) ① 사업주체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(이하 “해지 등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자체는 평택 고덕 어울림스퀘어 아파트 단지 내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 본 협약의 “해지 등”을 할 수 있다.

③ 당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“해지 등”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“해지 등”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“해지 등”的 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.

④ “해지 등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“해지 등”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배상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협약의 “해지 등”이 발생하는 경우, 사업주체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총공사비 및 각종 기자재 총구입비 중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마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액 감가상각하여 지자체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에 따라 협약의 “해지 등”이 발생하는 경우, 지자체는 “건물 등”的 사용권 반환시점을 고려하여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원아동의 전원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용권 반환) ① 지자체는 제12조에 따른 협약의 “해지 등”이 발생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감안하여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위탁체의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 “건물 등”的 사용권을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체는 지자체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고 사업주체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“건물 등”的 일체 원상복구를 “건물 등”的 사용권 반환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지자체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4조(협약의 해석)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.

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에 대하여 지자체와 사업주체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5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은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협약서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른 “건물 등”的 사용권 반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건·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, 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, 지도·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·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.

제16조(협약의 승계) ① 사업주체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제반 규정에 따라 평택 고덕 어울림스퀘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구성된 날로부터 즉시 본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·의무를 이전하여 당연 승계토록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협약상의 모든 권리·의무를 승계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초 체결된 협약사항에 대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본 협약서의 내용에 이의 없이 합의하며, 이를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서명한 후,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0년 10월 일

(본 협약서는 전문 및 본문 제1조에서 16조까지로 구성되었음)

대한제16호고덕어울림뉴스테이위탁관리
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홍 두 표



평택시장



■ 별첨. 어린이집 설계도면

